

『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2년 9월 18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2년 9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02년 9월 25일

제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도시건설국장 김 해 운

나. 제안이유

-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(2002. 4. 27)됨에 따라 구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기금의 운용·관리

-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할 기금액(장기예치 기금액)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·관리토록 신설 (조례안 제3조)

○ 장기예치 기금액의 관리

- 장기예치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·관리토록 신설 (조례안 제4조)

○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·관리

-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금고에 관리
-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관리·운용 관리토록 신설
(조례안 제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,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완 진

-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기금의 적립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하겠음.
-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미시의 자연재해대책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에 의거 조례안 3조, 4조, 5조를 개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서 장기예치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을 별도로 운용·관리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.
- 개정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